

## ■ 주제발표 내용(요약)

###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 대구중재부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 I. 문제의 제기

언론의 취재 보도는 언론매체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론매체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이 묵시적 동의는 언론매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론매체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데 합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바로 올바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는 흔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보도는 사실에 입각해 바르게 보도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아 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기록이나 자료, 관련서류를 찾아 확인하고, 관계 전문가나 권위자,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인용을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확한 보도에는 그 기사의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이 밝혀져 있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올바른 보도라면 그렇지 못한 보도는 그릇된 보도, 오보가 된다. 오보는 언론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확신마저 부정하게 할 수 있다. 또 오보는 의사소통채널을 붕괴시키고 언론이 국민과 한 묵시적 합의 약속을 깨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접수 처리된 사건의 조정·중재

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본다.

## II. 오보의 정의와 발생원인

### 1. 오보의 정의

‘그릇된 보도’는 흔히 허보·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불공정보도·부정확한 보도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보도가 일어나는 요인들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경우이다.

오보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릇되게 보도 되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보도의 잘못으로 인해 쓰이고 있는 허보·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불공정보도·부정확한 보도 등은 언론이 보도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체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또 진실한 보도를 하지 않는 보도이다. 따라서 오보란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라고 할 수 있다.

### 2. 오보의 발생원인

오보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Greenberg와 Tannenbaum은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기자가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보에 접하게 될 때 오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기자 자신이 평소에 취재에 임하는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자의 취재보도와 관련된 개인의 미숙성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

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및 과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결여, 상대방의 의식적인 기만에 의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 확인 미비 등은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있다.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이나 통신기사의 확인 어려움 등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으로 오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요인들이다.

### III. 오보의 유형과 특징

오보의 유형은 크게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이름, 철자, 주소, 장소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을 잘못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며 또 공표사실이나 발표문, 보도자료 등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의 미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객관적 오보는 주로 언론인의 확인부재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주관적 오보는 부정확한 제목, 과대·과소표현, 생략 등과 같이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언론인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오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징

언론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개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가 신청되는 보도기사는 그 형태가 어떠한 그 전제는 뉴스의 보도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정 또는 중재가 신청된 보도기사는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가 아닌 오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정·중재신청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오보의 유형과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류해 그 유형과 특징을 찾아보기로 했다. 때문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기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오보의 원인과 유형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 1. 연구문제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들이 어떠한 오보발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는 어떠한 오류(오보 발생원인)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는 어떠한 유형의 오보를 구성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사에 나타난 오보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 가운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조정 신청된 모든 기사인 47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내용을 분석했다. 신문이 33개 기사(7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14개 기사로 29.8%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조사측정항목

이 연구의 기본취지는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들이 어떠한 오류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측정항목으로 하여 기사를 분류해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기사의 중심주제, 신청기사의 보도공정(균형)성, 신청기사의 정보원의 활용출처, 신청인의 주장에 나타난 신청기사의 오류 유형, 신청기사의 오보 유형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 (1) 신청기사의 중심주제

기사의 중심주제는 신청된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정치, 정책·행정, 경제, 환경, 교육, 여성·복지, 의료, 범죄·사건·사고, 재난, 문화, 연예·오락, 인물·미담, 동정, 기타 로 분류하였다.

### (2) 신청기사의 보도 공정(균형)성

기사의 보도가 공정(균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를 공정한 기사로,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담고 있거나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기사를 공정하지 않은 기사로 분류하였다.

### (3) 정보원(news sources)의 활용출처

기사에서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보원의 활용 출처 형태를 나누었다. 기사내용에서 정보원이 사람인 경우는 개인으로, 기관명만 밝혀진 경우는 기관으로, 보고서 등 자료에 의존한 경우는 자료로 분류하여 다중으로 검토했다.

### (4) 신청인 주장의 오류유형

기사에서 신청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잘못된 사실 혹은 정보를 인용하여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하는 유형을 객관적 오류유형으로, 그리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한 경우,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하는 유형을 주관적 오류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보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실 또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오류로 분류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인용하며 특정 인물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 적절하지 못한 보도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잘못된 정보 확인으로, 취재과정 중 관련 사실의 확인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해 특정 사실이 생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확인미비로 특정 당사자의 주장·정보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생략으로,

취재과정에서 정보원의 언행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과대표현 사용으로, 그리고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경우를 미동의로 구분했다.

#### (5) 오보의 유형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의 분류 유형에 따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분류했다. 기사에서 신청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잘못된 사실 혹은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를 객관적 오보로, 그리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거나,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한 경우,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하여 보도한 기사를 주관적 오보로 분류했다. 또 보도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실 또는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오보로 분류했다.

### 3. 분석결과

#### 1) 조정·중재신청 기사의 중심주제

조정·중재신청 기사들을 중심주제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가 29건(61.8%)으로 신청기사건수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청기사가 많은 중심주제는 정책·행정 분야로 10건(21.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중심주제는 전체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 교육, 정치, 문화와 관련 기사가 조정신청 되었으나 경제, 환경, 여성·복지, 스포츠, 연예·오락, 인물, 미담 등과 관련된 기사는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언론 매체의 경우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주로 반영하는 지역 언론의 특성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조정·중재신청기사의 보도 공정(균형)성

신청된 기사의 보도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6건(76.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관계 속에서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만 편향되게 보도한 일방적 내용의 경우가 쌍방향적으로 대립, 갈등 입장을 고르게 다루는 기사인 11건(23.4%)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경우 사실 확인, 문제제기 등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기사내용에서 골고루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조정·중재신청기사의 정보원(news sources)의 활용출처

신청기사의 내용에서 어떠한 정보원(news sources)을 활용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정보원으로 개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20건(42.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관과 자료를 함께 활용한 경우가 13건(27.6%), 정보원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8건(17.0%), 개인과 기관, 자료를 모두 활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6건(12.8%)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보원(news sources)을 많이 활용할수록 조정 혹은 중

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만을 정보원으로 할 경우 기사의 부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신청인 주장의 오류유형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어떤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신청인이 보도내용 기사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류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허위사실이거나 실제 발언한 것이 아니거나 기자가 임의로 관련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을 생략했다고 주장하는 주관적 오류는 11건(23.4%)이었으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도가 되었다고 주장한 기타오류가 3건(6.4%)이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오류들의 세부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25건(75.8%), 잘못된 정보 확인이 8건(24.5%)으로 정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가 전부다.

주관적 오류의 경우는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임의로 정보를 잘못 확인한 경우 7건(63.6%)으로 가장 많다. 즉,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로 기자에 의한 주관적 정보 확인이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이 3건(27.3%), 사실생략이 1건(9.1%),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를

3건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사실오류이든 주관적 사실오류이든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황이해와 취재보도에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자가 취재,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사내용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범죄와 같은 속보성 기사의 경우 취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재과정상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유에는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개인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즉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실 확인의 미비,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부족, 상대방에 대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 또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취재보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중심주제별 세부오류 유형

조정·중재 신청된 기사의 중심주제에 따라 나타난 세부 오류 유형이 있다. 정치기사의 경우 모두가 잘못된 정보 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행정 관련 기사의 경우는 사실 확인미비가 9(90%)건, 잘못된 정보 확인이 1건(10%)으로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가 절대적이다. 교육과 의료의 경우도 사실 확인미비가 각각 2건이다.

사건·사고·범죄 기사의 경우 잘못된 정보의 확인이 12건(41.4%)으로 가장 많고, 사실 확인미비가 11건(37.9%), 미동의를 3건(10.3%), 과대 표현이 2건(6.9%)이다. 문화관련 기사의 경우 1건이 사실 확인미비로 나타났다.

#### 6)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 따른 세부오류 유형

보도내용이 일방적 혹은 쌍방적인가에 따라 주장된 오류의 세부내용이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36건(76.6%)이며, 쌍방적인 경우가 11건(23.4%)으로 일방적 보도에 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인 경우 사실 확인미비가 19건(52.7%)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 확인이 14건(38.8%)이나 된다. 즉 일방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이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적인 경우에도 사실 확인미비가 6건(54.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차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쌍방향인데 불구하고 미동의를 의한 오류도 3건(27.3%)이나 되고 있다.

보도내용이 일방적 혹은 쌍방적인지를 분류하였을 때도 객관, 주관적 사실에 따른 오보와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과 관련된 오보가 많다. 게다가 기사내용이 일방적일 경우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건수가 2건(5.6%)이 있고 특정 사실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는 기사가 일방적인 경우에 오보가 발생하는 세부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오보의 유형과 특성

조정·중재 신청된 보도기사들이 어떠한 오보유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오류의 유형이 오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보도내용 가운데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객관적 오보가 33건(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객관적 오보는 모두 사실 확인미비와 잘못된 정보 확인으로 인해 오보가 발생했다.

주관적 오보는 11건(23.4%)으로 기사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사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보도해 오보가 된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은 과대표현의 사용, 사실생략 등으로 인해 오보가 되고 있다.

정보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모습을 담거나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주장한 미동의를 3건(6.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미동위에 의한 오보는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오보에 가깝다.

## V. 요약 및 결론

언론의 취재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본원적인 기능이다. 이 본원적인 기능은 언론매체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언론매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제공하고, 국민은 언론매체가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데 합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바로 올바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는 흔히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취재보도에서 벗어나 그릇된 보도, 오보가 이루어져 언론의 신뢰는 물론 독자,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라고 주장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한 기사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47개의 모든 기사를 통해 그 유형과 특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첫째, 사건·사고·범죄 관련기사와 정책·행정 관련기사가 신청기사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언론의 특성과 매우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지역 언론의 특성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나 범죄,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임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신청기사의 보도 균형성에서는 일방적 보도가 대부분이며, 뉴스 정보원의 활용출처도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청인이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오류의 유형 가운데는 객관적 오류(7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부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를 보도하여 기사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객관적 오류의 경우 사실 확인미비(75.8%)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잘못된 정보 확인(24.2%)으로 인한 오류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확인미비로 인한 오류발생은 정책·행정기사, 의료, 교육, 사건·사고, 문화 등 대부분의 중심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자가 임의로 관련 사항을 보도했다거나 취재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 과대·과소 표현을 했다거나, 습득한 정보 중 특정사항의 생략 등으로 인한 주관적인 오류(23.4%)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관적 오류의 대부분은 정보 확인을 하면서 기자가 주관적(편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오류를 범한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오류가 많이 발생한 중심주제 역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였다.

넷째, 오보의 유형으로는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이며, 객관적 오보는 사건·사고·범죄관련 기사와 정책·행정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오보는 4건의 오보 가운데 약 1건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건·사고·범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오보이든 주관적 오보이든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황이해와 취재보도에서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보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자가 취재,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사내용에 오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범죄와 같은 속보성 기사의 경우 취재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재과정상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유에는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개인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실 확인의 미비, 사건을 꿰뚫어 보는 선견지명의 부족, 상대방에 대한 오인, 뉴스 평가의 잘못 등 대부분 기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다. 또 기자의 귀책사유에서 벗어나 기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취재관행,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취재보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면 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의식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대기자 제도의 활성화, 언론사 내에서의 지면

심의 기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보는 언론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오보는 독자, 시청자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스원(news sources)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언론은 오보를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과 국민 간에 맺어져 있는 묵시적 합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